

##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개인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 정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일) 후속조치 필요

3. 주요 제개정 내용

□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 구입자(3억원 초과)에 대한 보증제한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07월 07일 18시(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서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주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과장 박가영(gyp@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22

○ 팩스번호 : 0505-036-0462